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66
----------	------

발의연월일 : 2017. 9. 18.

발 의 자 : 윤상직 · 이정현 · 윤영석

송희경 · 박명재 · 윤상현

주광덕 · 윤재옥 · 유재중

나경원 · 장제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 -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을 “매개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제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매개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 및 그 사체와 분변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
 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
 얼의 개발 및 보급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역학조사)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